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

발의년월일 : 2026년 10월 2일
대표발의자 : 김안나 의원
공동발의자 : 이원우 의원, 유미현 의원, 정성일 의원
찬 성 자 : 박성희 의원, 위정희 의원, 이희승 의원, 박지선 의원, 이승희 의원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지털포용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규정에 디지털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나.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

다.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

라. 그 밖에 관련 규정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표현을 정비함
(안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및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부서협의 : 관계 부서와 협의 완료(첨단도시과)

라. 기　　타 :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별첨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으로, “관련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을 “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의 뜻은”으로,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으로, “정보화 관련”을 “관계”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각각 “지능정보화 추진 및 디지털포용 증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디지털포용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 시행”을 “교육의 시책 마련 및

시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안업무 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재난·재해”를 “재난·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업무 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이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를 “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이용교육”을 “정보이용 및 디지털역량 교육”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강화”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수강횟수”를 “수강 횟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 따른 ----------.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 ---------- 관계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화 추진 및 디지털포용 증진---------- ---------- ----------.
② 구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지능정보화 추진 및 디지털포용 증진---------- ----------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
제10조(지능정보화 교류) ① (생략)	제10조(지능정보화 교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
1.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1. ---------- 국내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생 략)	제12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디지털포용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 교육의 시책 마련 및 시행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실에 대하여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통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관리) ① ---------- 「보안업무규정」---------- 재난·재해 ----------.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관련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하는 자에게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 「보안업무규정」----------
제15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정보이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 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하여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3. ---------- 정보이용 및 디지털역량 교육----------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6조(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제16조(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 실시할 -----.
제17조(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 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강화----------.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 ① (생략)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 4. (생 략) ③ (생 략)	1.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화교육의 활성화) ①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하거나 개인별 연간 수강횟수의 한도를 정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과정별로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로 수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정보화교육의 활성화)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수강 횟수---------- ----------. ----- ---------- ---------- ---------- ----------.

관 련 법 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삭제 <2025. 1. 21.>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디지털포용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 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조사·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필요시 조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 및 지원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임기제8급 신민철